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요강



2017년 8월 1일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02)901-8604, fax: 02)901-8606 <http://gifted.duksung.ac.kr>

선발요강 공고일 : 2017년 8월 28일 (월)

※ 아래 제시된 모든 학년은 2017학년도 학년을 기준으로 함
2018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에서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선발 분야 및 정원

선발 분야	선발 인원	
	초등 (현재 초6학년)	중등 (현재 중1학년)
수 학	15명	-
과 학	15명	-
전 산 정 보	10명	※ 3명

- ※
- 2017학년도 전산정보반 신설
 - 1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사과정 선발 대상자가 됨

2. 선발일정

선발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비고
입학원서 교부	9.4.(월) ~9.22.(금)	9.22(금) 17:00 까지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양식사용
전형료 납부	9.4.(월) ~9.22.(금)		하나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	입금자명은 학생이름(학교) 예)나영재(영재중)
서류 제출	9.4.(월) ~9.22.(금)	9.22(금) 17:00 까지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방문
	9.4.(월) ~9.22.(금)	9.21(목) 우체국 소인까지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우편
서류합격자 발표	10.27.(금)	17:00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확인
인성·심층 면접	11.4.(토)	9:00 ~17:00 (예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1.10.(금)	17:00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확인
합격자 등록	11.13(월) ~11.17(금)	10:00 -17:00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3. 교육 프로그램

- ◆ 교육 기간 : 2018. 3 ~ 2018. 12
- ◆ 학기 중에는 매월 격주 토요일(9시~13시) 교육을 실시, 여름방학기간 3일간의 집중수업과 2박3일간의 산출물 발표대회를 실시함
- ◆ 교육 시간은 각 반별로 교과교육, 인성교육, 현장 방문교육, 산출물 발표대회 등 100시간 이상
- ◆ 과학반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함
- ◆ 전산정보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함
 - ◆ - 컴퓨터사고능력, 정보과학적모델링, 컴퓨터프로그래밍, 피지컬컴퓨팅
- ◆ **영재교육원 수업료 : 30만원 (2017학년도부터 적용)**
- ◆ 영재교육원 운영비용을 도봉구에서 지원하며,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수업료, 집중교육과 캠프운영비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담함.

4. 지원 자격

- 선발요강 공고일 당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8학년도에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예정인 자로 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재원 중에도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함)
- 지원 시 유의 사항
 - 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 혹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
 - 타 영재교육원과 중복 합격한 경우 1군데만 등록하여야 함
 - 본 영재교육원 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한 경우 합격통보 즉시 취소하여야 함)

5. 전형단계 및 선발 방법

가. 일반전형

전형 단계	주관 기관	선발과정		선발방법
1단계	단위 학교	집중관찰 대상자 선정	자기추천	가.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 나. 지원서 접수
2단계		학교장 추천		-기간: 9월4일(월) ~ 9월22일(금) 17:00 까지
3단계	영재교육원	서류심사		가. 정원의 2배수 이내 선발 나. 3단계 합격자 발표 -일시: 10월 27일 (금) 17:00 예정
4단계		인성·심층 면접		3단계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 분야별 면접 -일시: 11월 4일(토) 9:00~17:00 예정
5단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나.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10일(금) -홈페이지, 개별통보

- 전형1단계(자기추천) : 모집정원의 30% 이내에서 자기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특별전형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사회통합대상자(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10%까지 우선 선발(세부자격 요건은 붙임1 참조)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시

※ 학교장 추천(전형 2단계) 안내

가. 일반전형 지원자 추천

- 1) 추천대상자 : 소속 학교의 관찰·추천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자
- 2) 자기추천대상자 : 본인이나 보호자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생각되어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특별전형 지원자 추천

- 1) 추천 대상: 사회통합대상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1단계 전형(집중 관찰)을 신청한 자(세부 자격 요건은 붙임1 참조)
- 2) 추천 방법 및 추천 인원: 단위 학교 영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소속 학년에서 2명 이내로 추천 가능함

6. 지원방법

가. 입학원서 교부

- 기간: 9.4(월) ~ 9.22.(금)
-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http://gifted.duksung.ac.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

나. 선발 전형료 납부

- 금액 : 40,000원 (※ 특별전형 지원자는 납부하지 않음)
- 납부기간 : 9.4.(월) ~ 9.22.(금)
-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고 입금증 사본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
하나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영재교육원>
 ※ 송금 시 입금자 정보 : 학생이름(학교) 예) 나영재(영재초)

다. 지원자 제출서류 : 본원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 등기우편 및 택배 (우편소인일 9월 21일 목요일 기준), 방문접수
- ▶ 방문 시 접수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지원서 [양식1]	본인 및 보호자 작성, 학교장 직인 필요
자기소개서 [양식2]	지원학생 본인 직접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양식3]	본인 및 보호자 직접 작성
추천서 [양식4]	추천인 직접 작성 날인하여 봉인한 후 지원자가 제출
전형료 입금 확인증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II	학교에서 발급된 원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확인용
사회통합대상자 지원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5]	본인과 보호자가 작성, 학교장 직인필요 (사회통합 대상자만 해당)
학부모 확인서 [양식6]	보호자 직접 작성 (사회통합 대상자만 해당)
학교장 추천서 [양식7]	학교장 직접 작성, 학교장의 직인필요 (사회통합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대상자유형만 해당)

• 학교생활기록부 II

- 1) 학교 행정실에서 지원자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 II'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
- 2) '학교생활기록부 I'이 아닌 '학교생활기록부 II'를 발급받아야 함

3) 직인(職印)과 간인(間印)이 찍혀있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직인이 찍혀 있는지, 모든 페이지에 간인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추천서(양식[3])

1) 추천인의 자격: 현직 교사, 영재교사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담임교사(지도교사, 지도교수).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추천인이 될 수 없음

4) 덕성여대 홈페이지(<http://gifted.duksung.ac.kr>→공지사항)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추천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 및 날인하고 봉인한 것을 지원자가 받아서 직접 제출(봉인하지 않은 추천서는 인정하지 않음)

5) 봉투 전면 왼쪽 하단에 '추천서 재중'이라고 기재할 것

6) 제출된 추천서에 대해서는 누구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내용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7) 추천서 접수 이후 본원은 추천인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인은 본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함

7. 전형 절차

가.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 (우편소인일 9월 29일 목요일 기준), 방문접수

▶ 방문접수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2) 접수기간 : 9.4.(월) ~ 9.22.(금) 17:00까지

3) 서류합격자 발표 : 10월 27일 (금) 17:00 예정

나. 면접

1) 대상자 : 3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2) 일시 : 11월 4일 (토)

3) 장소 : 3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4) 준비물

1) 신분증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2) 문구류 (연필, 지우개)

3) 각 모집분야별 준비물(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

※ 대기실 반입금지 물품

• 통신 가능기기(휴대전화 등)

• 녹음·촬영·녹화가능기기(녹음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 MP3 재생기, 라디오, PMP, 휴대용 게임기 등

다. 최종합격자 선정

- 1) 일시 : 11월 10일(금)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문자
- 2)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단, 2018학년도 입교식 이후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함.)

라. 합격자 등록

- 1) 기간 : 11.13. (월) ~ 11.17. (금) 10:00 - 17:00 (12:00-13:00 제외)
- 2) 방법 : 영재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록
- 3) 제출 서류 :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4) 입학금 및 수업료 : 30만원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부담.)
※ 등록을 하지 않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입학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분야별로 차순위 지원자로 충원함

8. 유의사항

- 모집요강의 미숙지에 따른 문제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전형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 선발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 후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전형료 납부 시, 입금자 정보는 학생이름(학교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최종 합격 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9. 문의처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도봉영재교육원
- 전화 : 02) 901-8604~5
- 팩스 : 02) 901-8606
- 이메일 : gifted@duksung.ac.kr
- 홈페이지 : <http://gifted.duksung.ac.kr>

<붙임1>

사회통합대상자의 유형 및 자격

1.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 허위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 허위로 차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재산세를 확인하고, 부모 모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참고자료 3】 참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다양성 전형

🍌 지원 자격 제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직장 가입자'및'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을 추가 확인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128,019원	189,872원	210,385원	193,438원	612,801,900원	367,681,140원	840,7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참고자료 3】 참고

■ 사회다양성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급~3급)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

참고 자료 1

■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10쪽 【참고자료 3】 참고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참고 자료 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461,727	44,898	20,093	45,603
2분위 (P20)	2,261,022	70,038	61,080	70,438
3분위 (P30)	2,878,568	88,759	90,642	89,571
4분위 (P40)	3,428,016	105,337	115,666	106,673
5분위 (P50)	3,970,780	121,620	137,459	122,753
6분위 (P60)	4,542,903	140,943	159,298	143,052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 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분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461,727	146,172,700	87,703,620	101,550
2분위	2,261,022	226,102,200	135,661,320	173,490
3분위	2,878,568	287,856,800	172,714,080	251,780
4분위	3,428,016	342,801,600	205,680,960	334,200
5분위	3,970,780	397,078,000	238,246,800	415,610
6분위	4,542,903	454,290,300	272,574,180	501,430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참고 자료 4

■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10쪽 【참고자료 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참고 자료 5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비법정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사회 다양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단,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서울미고(자율학교)는 정원외(2~3%이내)로 선발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 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중인 소방장 이하) 	

※ 사회다양성전형은 8분위 이하 자녀에 한해 지원 자격 부여

참고 자료 6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학교 (교육급여증명서만 가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차차 상위 계층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 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 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 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 훈 자 자 녀 전 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학생이름으로)	관할 보훈지청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 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독립유공자 확 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하 영재교육원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 므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로 대체 확인함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소득 분위 8	지역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분위 이하 자녀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 확인에 필요한 해당 서류 징구

(예: 다문화가정 자녀-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체단치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등,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사본) 등)